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524호**
공포일자 : 2010. 12. 13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02-2110-5475)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c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시설공사를 통하여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종전에는 전기사용자가 5호 이상인 섬 지역이나 벽지(僻地) 지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이나 벽지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 섬 및 벽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2538호**
공포일자 : 2010. 12. 20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2-2110-8233)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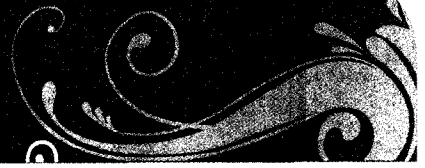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취득세의 1배부터 5배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로 조정하여 과태료의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부 령 : 제315호

공포일자 : 2010. 12. 20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02-2110-837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신고하게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산정 시 표창 등에 따른 경감 제도를 폐지하고 부실벌점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38조제1항 신설)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주요 자재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시험 및 시험·검사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나.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안 제43조 신설 및 안 별표 1)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그 교육기간을 정하고,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자의 신고(안 제44조 신설)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발급 사실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강화함.

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49조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실벌점 제도의 정비(안 별표 10)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표창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경감하던 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부실벌점 산정시 측정된 부실의 정도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부실벌점의 관리를 강화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2항제5호, 제4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제28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526호**
공포일자 : 2010. 12. 13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2-2110-620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 도로 설치 의무 신설(안 제41조제2항 신설)

-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2)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안 제61조제2항 신설)

- 1)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다른 건축물에게까지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2)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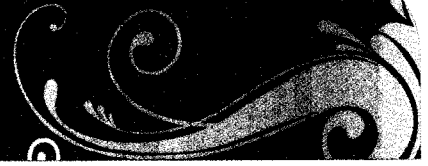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안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7조제1항 신설, 안 별표 3)

-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을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0-1042호
예고기간 : 2010. 12. 29 ~ 2011. 1. 18
담당부처 : 철도기술안전과(02-2110-8829)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철도의 고속화와 시설 증량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안전기준 정립 필요

- 철도시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R&D사업 성과 반영
- 안전기준이 없는 전철·전력, 신호·통신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적절한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안전성분석”의 절차와 기준 미흡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됨에 따른 개선
- 철도 기술발전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제8조)

-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 (3) 안전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다. 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라. 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바. 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사. 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아.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

생활속 법령상식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Q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저와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상속분은 배우자인 귀하는 상속재산의 3/5, 아들은 2/5가 됩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써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한편, 우리나라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의 구 민법체제하에서의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을 받는 사람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같이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호주상속을 받는 자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받았고, 호주상속을 받지 않는 차남들에게는 분재청구권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1

-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전기 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규모/용도/전기용량 등의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전기 설계업무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력시설물(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설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설계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종합, 전문 1종, 전문 2종 설계업으로 구분하고,
 - 종합·전문 1종 설계업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을 영업 범위로 하고 있으며,
 - 전문 2종 설계업은 일반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의 설계도서 작성을 영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7. 30)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실적〉

- 공동주택 공고에 연면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부분, 비주거시설 부분으로 나누어 있을 때 공동주택 부분은 100%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주거시설 부분은 몇%의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비주거시설 부분은 어떤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경부고시 제2009-51호)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 별 세부평가방법 제2호에 따라 유사용역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 (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20, 22~29 : 공공건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비주거시설 부분은 어떤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의 정확한 의미가 불명확하나, 건축허가서 등의 용도로 건축물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8. 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설계도서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요.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는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청한 설계도서입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에는 각 기관이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통합기술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8. 3)

- 기존건물이 있는데 별관을 증축하면서 기존건물에 있던 변압기 2대를 철거하고 1대 신설(용량변경 없음, 400kVA)한 후 별관 쪽으로 자중, 저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공사계획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감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감리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2인으로 계약할 예정인데 전기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와 달리 상주와 비상주의 개념 및 책임감리 개념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공사의 경우 비상주 감리원이 더 높은 고급이나 특급감리원이고 상주감리원은 그보다 낮은 감리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은 책임감리가 일정공사금액 이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사항과 행정적인 서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의 경우 책임감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리원의 불성실한 직무태도 등에 대해 처벌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 근거 및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공사 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경부고시 제2009-3호, 2009.1.16) 제25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의 자격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지경부고시 제2009-160호, 2009.8.3) 제3조에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의 용어 뜻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감리원의 행정적 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수행지침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의 불성실한 직무태도에 관한 처벌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체부평가기준”(지경부고시 제2009-51호, 2009.3.23)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법절측정기준의 주요 부실내용을 참고하여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7. 29)